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7일
발 의 자 : 경수현, 김육영, 정해숙, 강수진, 정병기, 정기혁, 김경이, 소형준

1. 제안이유

가. 기존 조례가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로 한정하여 사회 내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고,

나. 1인 가구가 아닌 고독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성북구도 고독사 예방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삭제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8조)

다. 예방 및 지원 사업에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3. 11. 7. ~ 2023. 11.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을 “임종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인 가구를 말한다”를 “가구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성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

함한다)”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1인 가구 중 경제적인”을 “경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된 은둔형 외톨이 및 고독사 위험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취업을 위한 상담・교육 등 맞춤형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1. <삭 제>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 임종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 가구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다.

<신 설>	5.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성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1. 경제적 ----------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 발굴된 은둔형 외톨이 및 고독사 위험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취업을 위한 상담·교육 등 맞춤형 지원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